

어업경영과 세무 (Ⅲ)

수 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기획조사부 차장 고 석 환

목 차

1. 어선어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
2. 어선의 유지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무처리
3. 인건비 지출에 대한 세무처리
4. 어구·어망비 지출에 대한 세무처리

3. 인건비 지출에 대한 세무

(가) 서 론

○ 최근 국세당국에서는 틸루세원을 발굴·색출하고 겸하여 세수도 확보코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등 어선어업에서 인건비 지출속에 탈루된 세원이 없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선어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혼자서 자기사업을 모두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종사원을 두어서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고, 일을 시키게 되면 반드시 그 노력의 댓가로 각종 인건비의 지출이 따르게 됩니다.

○ 종사원 노력의 댓가로 지급하는 인건비에는 보수·급여·상여·퇴직금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인건비에 대하여 세법과 세무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지급하는 사업자 즉 선주측의 입장입니

다. 선주가 선장, 갑판장, 기관장 또는 일반선원이나 사무실종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과세소득계산시 당연히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인정됨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세법은 인건비라고 해서 판용만을 베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출한도를 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건비 지출이 사실이었더라도 과세소득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점은 다음(내)에서 설명키로 합니다.

둘째, 인건비를 받는 종사원측의 입장입니다. 선장 등 선원과 사무실직원이 받는 인건비는 대부분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 많아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는 일차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선주에게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주는 급여 등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와 그 인건비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것)까지도 책임을 지는 이중의 책임이 있습니다. 국세당국도 선주의 원천징수의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가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을 곤두세우곤 합니다. 선주가 인건비지급책임과 세금의 원천징수의무까지 있다고 해서 인건비 모두가 징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은 다음(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인건비 지급에 관한 세무에 있어서 유의할 것은 당해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가 임원이나 직원(종업원)이나에 따라 그 처리기준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임원과 직원(종업원)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점을 간략히 소개코자 합니다.

임원이란 기업파의 위임관계를 말하고 종업원

이란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임원과 법인과의 관계가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근거법이고 개인사업자는 위임관계의 임원이 없기 때문에 임원문제는 제기되지 않음)에서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하고 또 달리 취급합니다. 이는 임원보수라는 명목으로 보수를 과대하게 계상함으로써 조세회피를 기도하는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세법에서의 임원이란 회장, 사장, 대표이사, 부사장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감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그리고 감사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나) 인건비 지출과 소득세(법인세) 과세소득

- 인건비 지출이 선주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text{수입금액} - \text{경비} = \text{과세소득}$$

$$\begin{array}{l} \text{위판금액 및 } \\ (\text{그외 수익}) \end{array} \quad \begin{array}{l} \text{(개인사업자 : 필요경비)} \\ \text{법 } \quad \text{인 : 손 } \quad \text{비} \end{array}$$

필요경비(손비)의 내용 : 인건비, 조세공과금, 유류대, 기부금 및 접대비, 수선비, 지급이자, 어구, 어망비, 충당금과 준비금 등.

따라서 위 필요경비(손비)의 내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산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인건비가 그래도 가장 클 것입니다. 어떤 업종은 특히 짓가림에 의거 선주와 선원간에 배분이 일어나는 업종의 경우 전체 수산물 위판금액(수입금액)의 50%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인건비의 지출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과세소득이 크게 변동되는 것이고 따라서 세금의 부담액도 엄청 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무회계에서 인건비 지출에 따른 필요경비(손비)의 인정은 당해 인건비 지출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여부가 선행되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인건비지출 중 특히 문제되는 부분만 골라서 설명하겠습니다.

- 사업자 본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세무처리 :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신 또는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세무회계상 두가지로 구분해서 처리됩니다.

첫째, 수산업경영자가 법인체인 경우로써 법인과 법인대표인 사장이나 회장은 별개의 인격자이고 사장 또는 회장은 법인의 종사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이 종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당연히 기업의 손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급여 중 상여금을 당해 법인에게 출자한 사장, 회장 등의 임원 즉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것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고 오직 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만이 손비로 인정됩니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대표나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세무처리).

정기의 급여(보수, 급료) → 적정범위내
손비인정

임시의 급여(상여) → 출자자인 경우 →
손비불인정
→ 비출자자인 경우 →
손비인정

둘째,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소득과 당해 기업의 소득과 하등 구분이 없기 때문에 사장 또는 대표자 등 어떤 명칭의 위치에 있는 자라도 사업자 자신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만큼 당해 수산업자의 과세소득에 합산시켜 과세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자의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시비가 있었으나 최근의 판례로는 그 가족이 사업을 위해서 실제로 일을 했고 또 급여의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산업자의 쳐는 물론 그 부모에게 지급한 급여도 적정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종업원에게 현물급여하는 경우 :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현물급여(現物給與)라고 하는 바 현물급여로서는 통근용정기권 또는 통근버스 이용, 식사의 제공, 의복의 제공, 표창, 기념품의 증정, 결혼축하금품 등이 있을 수

있읍니다. 이들 현물급여의 경우 세법상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수산업 경영상 필요한 것일 것.
- ② 통상적으로 적정한 금액일 것.
- ③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경리(세무처리)가 되어 있을 것.
- ④ 채무가 확정되어 있을 것. 즉 종사원에게 당해 연도 중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되어 있을 것.

여기서 다시 문제되는 것은 현물급여의 경우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계상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기준을 소개하면 수산업자가 선원에게 지급한 때에는 지급당시의 실가에 의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원천징수도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의 식사대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필요경비(손비)로 세무처리가 되는 것이며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급여로써 필요경비(손비)로 처리되며 또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합산시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임·직원퇴직금의 세무처리 : 기업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세무처리상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그 처리기준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다소 다릅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당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적정액의 범위내이고 당해 연도 장부에 의거 손비로 계산된 경우에만 인정되지만 결산결과에 의거 발생된 잉여금의 처분에 의거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원 아닌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모두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세무처리)

임원퇴직금	[이익처분일 때 → 손비불인정 손비경리할 때 → 손비인정]
직원·종업원퇴직금 → 손비(필요경비)인정	
퇴직금 지급에 문제되는 것은 언제를 퇴직으로 보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일 수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자신은 퇴직으로 처리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세법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고 따라서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아닌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퇴직으로 보는 시기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현실적인 퇴직이란 당해 기업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그 예로는

- ①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②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때
- ③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한 때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의 경우 :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사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충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법상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인정되지만 그 충당금의 적립액은 일정한도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즉 퇴직급여충당금의 전입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정한도액 : 당해 연도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총액

② 누적범위액 : 당해 연도 연말에 종업원이 전부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할 전체퇴직금의 50%이내.

위 ① 및 ②를 초과한 금액은 필요경비(손비)로 인정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다) 선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 선원 등 종사원에게 대한 급여의 지급상태 : 선주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지급방법을 살펴보면

- ① 매월 정액의 월급으로 고정 지급하는 경우
- ② 일급으로 보수를 정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 지급하는 경우
- ③ 일(日) 또는 월(月) 이외의 기간에 의하여 보수를 정하고 기간경과 후 항차당 지급하는 방법
- ④ 어획물을 기준으로 하여 선주와 선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합금 또는 짓가림으로 어획성과를 분배하는 방법

⑤ 노역제공의 댓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전도금

⑥ 사무실종사원은 일반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정상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선원 등 종사원이 받는 노역의 댓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입니다. 왜냐하면 선주와 선원은 고용관계에 있으며 종사원이 받는 댓가는 근로제공의 댓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합금에 의하여 선주와 종사원이 둘을 나눌 때 선주의 뜻 뿐 아니라 종사원의 뜻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수산업 소득에 의한 사업소득이라는 이론도 있고 그 주장에도 일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종사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모두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열거한 것은 근로자의 급여로써 근로소득이긴 하나 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비과세소득) 됩니다.

첫째, 실비변상급여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①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식료(食料). 여기서의 식료라 함은 교통부령으로 정한 선원식료품공급규칙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승무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을 말합니다.

② 일직·숙직 또는 여비로서 실비정도의 급액

③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 휴양급여, 장해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일시급여

둘째, 복리후생비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① 사용자인 선주가 종사원의 의료보험 기입에 따라 선원 대신으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이는 원래 선원 등 종사원의 급여에 속하지만 세금을 부담치 않는 것입니다.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사원에게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생리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급여의 구분 : 이들을 구분하는 실익은 다음에서 설명코자 하는 원천징수방법의 구분처리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들 구분은 세무처리상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 함은 일정한 선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선원(이를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등이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를 말하는 바 여기서의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선원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선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선원 등을 말합니다. 반대로 일반급여라 함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 종사원급여(선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요령 : 이들은 위 설명한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와 일반급여의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left(\begin{array}{l} \text{일용근로에 따라} \\ \text{지급하는 일일급} \\ \text{여액}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소득공제} \\ \text{* 일일} \\ \text{15,000원} \end{array} \right) = \text{일용근로소득} \text{ 파세표준}$$

$$\left(\begin{array}{l} \text{일용근로소득} \\ \text{파세표준} \end{array} \right) \times \left(\begin{array}{l} \text{소득세법 제 70조} \\ \text{제 1 항 기본세율} \\ \text{: 소득세율} \end{array} \right) = \text{소 득 세 산출세액}$$

$$\left(\begin{array}{l} \text{소 득 세} \\ \text{산출세액}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소득세 산출세액} \times \frac{30}{100} \\ \text{* 근로소득세액 공제} \end{array} \right) = \text{소 득 세 결정세액}$$

..... 남부할 세액

$$\left(\begin{array}{l} \text{소 득 세} \\ \text{결정세액} \end{array} \right) \times \frac{10}{100} = \text{방위세액} \quad \dots \dots \dots \text{남부할 세액}$$

$$\left(\begin{array}{l} \text{소 득 세} \\ \text{결정세액} \end{array} \right) \times \frac{7.5}{100} = \text{주민세액} \quad \dots \dots \dots \text{남부할 세액}$$

둘째, 일반급여의 경우

① 1월부터 11월까지 원천징수하는 요령

소 득 세	방 위 세	주 민 세
보험료 공제후의 월급 여액에 대한 잔이세액 표상의 잔이세액 (근 로소득 세액 공제 30 %, 20 %, 10 % 한 후 의 금액)	소득세액 × $\frac{10}{100}$ 또는 $\frac{20}{100}$ (월) 70 만원 초과 시)	소득세액 × $\frac{7.5}{100}$

* 잔이세액표 :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매월 급여 지급시마다 적용하는 간편한 세액조견표.

② 연말의 경우 원천징수 하는 요령 :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세액 계산절차는,

-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연 간 급 여 의 합 계 액	보험료 (의료보험료 : 무제한 공제 그외 보험료 : 24 만원까지) 의료비 (연 24 만원까지) 공제 교육비 (본인 : 무제한 자녀 : 1인당 12 만원까지 공제 2인 이내) 근로소득공제 (최고 170 만원까지)	=	근 로 소 득 금 액
--------------------------------------	--	---	----------------------------

- 과세표준의 계산

근 로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기초공제 : 30 만원 배우자공제 : 42 만원 부양가족공제 : 1인당 24 만원 장해자공제 : 1인당 30 만원 기부금특별공제 법정기부금 : 전액 공익성기부금 : 월급 의 5% 이내	=	소 득 세 과 세 표 준
----------------------------	---	---	---------------------------------

- 세액 산출의 계산

$$\boxed{\text{소 득 세}} \quad - \quad \boxed{\text{세 을}} \quad = \quad \boxed{\text{소 득 세}} \quad \boxed{\text{산출세액}}$$

- 결정세액의 계산

산출 세액	-	세 액 공 제	=	결 정 세 액	=	전 체 납 부 할 소 득 세
		근로소득세액공제 (30%, 20%, 10%) 저축세액공제 (재형저축가입)				

- 방위세·주민세 결정세액의 계산

$$\boxed{\text{소 득 세 결정세액}} \times 10/100 \quad (\text{또는 } 20/100) \\ = \boxed{\text{방위세}}$$

$$\boxed{\text{소 득 세 결정세액}} \times 7.5/100 = \boxed{\text{주민세}}$$

* 위 소득세 결정세액 방위세 및 주민세 결정세액에서 1~11월까지 매월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세액이 연말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됩니다. 즉

$$\boxed{\text{결정세액}} - \boxed{\text{기 납부세액}} = \boxed{\text{연 말 납부세액}}$$

이 때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에는 $(\text{기 납부세액}) - (\text{결정세액})$ 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하여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의 납부 : 선주가 종사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징수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납부해야 하고 이를 어길 때는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후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 : 선주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말정산을 원료한 경우에는 세금도 납부해야 하고 세금납부 때에는 다음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징수액집계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조서

- 근로소득계급별 결정상황표

위에서 연말정산할 때 받은 서류는 징수의무자 즉 선주가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보관해 두어야 할 서류로는

- ① 보험료납입증명서와 그 부속서류
- ② 의료비지급명세서와 그 부속서류
- ③ 교육비납입증명서
- ④ 일시퇴거자 소득공제신청서
- ⑤ 근로소득공제신청서
- ⑥ 기부금영수증
(다음호에 계속)